

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9. 11. 15 조례 제2546호
일부개정 2022. 4. 19 조례 제285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제2항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, 직업생활 및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장애인”이란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- “장애인 평생교육”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, 성인문자해득 교육, 직업능력 향상 교육, 인문교양 교육, 문화예술 교육,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.
- “장애인 평생교육 시설”이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) ① 시장은 「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 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포함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을 할 때 장애인의 성별, 연령,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, 장애인, 장애인 가족, 관계 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③ 시장은 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5조(장애인 평생교육 재원 확보 및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2.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·기회 제공
3.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
4.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5.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관련 편의제공
6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시장은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)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(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

2.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사업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 <개정 2022. 4. 19>

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,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<신설 2022. 4. 19>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19>

1.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장애인교육담당공무원

2. 장애인,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

3. 장애인단체·시설·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

4.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

5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2. 4. 19>

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19>

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19>
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9>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자문)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)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를 둘 수 있다.

1.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자격증 소지자
2.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

②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지원
2.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학습자 밸굴
3. 장애인 학습자 연계 등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 지원
4. 그 밖에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에게 보조강사 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4. 19]

제1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, 「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을 적용한다.

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. 4. 19]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. 4. 19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4. 19 조례 제28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